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59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정희용·박덕흠·김선교

김상훈 • 박준태 • 서천호

이양수 · 김소희 · 박정하

정동만 • 이만희 • 박충권

조지연 의원(13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뿐만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생태계, 산림재난 등 기후위기 적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식생대가 이동하며 산림생물다양성 이 감소하고 산림 건강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뭄・홍수 등 이상기후 로 인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피해가 증가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위험 최소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

약성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목적에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로 인한 위험 최소화를 포함함(안 제1조).
- 나.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 다. "탄소흡수원 지수"를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까지 고려한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로 확대하고, 산림청장이 이를 개발·측정·공표하도록 함(안 제26조).
- 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 사·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 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 및 통계를 수집·생산·분석·관리하도록 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법률 제 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유지·증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제26조의 제목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를 "(산림의 기후 변화 대응 지수의 개발 및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탄소흡수원"을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으 로, "기후변화대응"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과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이하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한다)를 개발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2년마다 시·도별로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개선하는 등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의 개발, 측정방법, 공표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포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7조의2를 제4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8조를 제43조로 한다. 제6장(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 제35조(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 ①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산림 안정성 및 회복력을 증진하여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 3.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발생 예측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4. 임산물 재배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기후영향조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수 있다.
- 제36조(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① 산림청 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 조사·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기후영향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 및 통계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상, 산림생태계,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임산물 재배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 및 통계를 수집·생산·분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수집·생산·분석·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

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38조(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림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기술 개발
- 2.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및 기술 개발
- 3.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생산·분석 •관리를 위한 표준 개발
- 4. 그 밖에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제39조(종전의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종전의 제37조의2)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영향조사·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 영향조사·평가는 제36조에 따른 기후영향조사·평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5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제1조(목적)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	
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	
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u>유지하</u>	
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증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u>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u>
	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u>•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u>
	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u>말한다.</u>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제26조(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 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과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 | 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이하 원 지수(특정 기간 동안의 탄 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과 해당 실적이 사회・경제・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측 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지방 수의 개발 및 공표) ① 산림청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 라 한다)를 개발하고, 특별시 •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u>특별자치도(이하 "시</u>·도"라 한 다)를 대상으로 산림의 기후변 화 대응 지수를 2년마다 시ㆍ 도별로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공공기관과 민 간을 대상으로 산림의 기후변 화 대응 지수를 측정하고, 개인 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 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 ② 산림청장은 <u>탄소흡수원</u> 지수 측정 결과 <u>기후변화대응</u>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 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측정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 ④ 탄소흡수원 지수 설정, 측정 대상 선정 및 측정, 공표 방법 및 절차,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
<u>할 수 있다.</u>
③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개선하는 등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u>④</u> 산림의 기후변
<u>화 대응</u> <u>기</u>
<u> 후변화 대응</u>
<u>⑤</u>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
림의 기후변화 대응
<u>⑥</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
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의 개
발, 측정 방법, 공표 방법・절
차 및 제4항에 따른 포상, 그
밖에 핔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u><신 설></u> <신 설>

<삭 제>

제6장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 제35조(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 책 수립) ① 산림청장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산림 안정성 및 회복력을 증진하여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변화에 대한 조사 및 예측에관한 사항
- 2.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모니 터링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 3.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산림재난 발생 예측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4. 임산물 재배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 6조에 따라 기후영향조사·평 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수립할 수 있다.
- 제36조(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
 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
 (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④ 기후영향조사·평가와 제2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 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보 및 통계의 관리) ① 산림청 장은 산림기상, 산림생태계,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임산물재배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 및 통계를 수집·생산·분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수집·생산· 분석·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단 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후위 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 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림의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기술 개발
 - 2.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및 기술개발
 - 3.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 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생 산·분석·관리를 위한 표준 개발

<신 설> 제35조(청문) (생략)

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 (생 략)

(생략)

-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조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 1. (생략)
 -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그 밖에 산림의 기후위기 적 응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제7장 보칙

<u>제39조</u> (청문)	(현행	제35조와	같
<u></u>			

제40조(실태조사 및 검사)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현행 제37조와 같음)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허해고	기· <u></u> ()		

- l. (연앵과 싙음*)*
- 2. 제41조제2항-----

제43조(과태료) ① -----

- 1. <u>제36조제1항</u>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 방해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하거나 보고한 자
- 2. <u>제36조제2항</u>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② (생 략)

1. <u>제40조제1항</u>
2. <u>제40조제2항</u>
② (현행과 같음)